

## 입찰공고

### 1. 입찰에 부치는 사항

- 가. 사업명: ‘세무사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’ 보험회사 및 운영회사 선정
- 나. 사업기간: 2024. 6. 30.(12:01) ~ 2025. 6. 30.(12:01)
- 다. 사업내용: 붙임 ‘제안요청서’ 참조

### 2. 일정

- 가. 제안서 접수: 2024. 3. 29.(10:00) ~ 2024. 4. 9.(11:00)
  - 나. 제안 설명회 및 평가: 2024. 4. 16.(13:00) / 한국세무사회 2층 대회의실
- \*내부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시 개별 안내 예정

### 3. 참가자격

#### 3-1. 보험회사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나. 제안서 제출일 현재 보험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보험회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- 보험업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본사를 둔 국내 손해보험회사
  - 지급여력비율: 140%이상(2023. 09. 금융감독원 공시 자료 기준)
  - 보험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: A-(투자적격) 이상인 손해보험사
- ※ 공고일 기준 유효한 최근 신용평가등급을 인정

- 다. 보험회사별 본사 1곳만 입찰 참여가능하며, 공동수급 미허용
- 라. 최근 2년 이내 감독관청으로부터 경영개선 권고 이상의 조치를 받지 아니한 자
- 마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

-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서명하여 제출
-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

### 3-2. 운영회사

- 가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 사업의 자격을 갖추고,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(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)에 해당하지 않는 자
- 나. 제안서 제출일 현재 보험업법 제89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배상책임보험 운영업을 영위하는 운영회사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

- 국내 보험업법에 의하여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보험중개법인
- 매출액 50억 원 이상  
(금융감독원의 2024년도 보험중개사(법인) 영업보증금 결정금액 통보서 기준)
- 비전속보험대리점(GA) 제외

- 다. 보험중개법인별 본사 1곳만 입찰 참여가능하며, 공동수급 및 하도급 미허용
- 라. 최근 2년 이내 정부 또는 감독기관 등으로부터 영업제한이나 규제를 받지 아니한 자
- 마.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‘조세포탈 등을 한 자’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 불가

-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안서 제출시 서명하여 제출
-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·해지를 당할 수 있고, 부정당업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음.

#### 4. 제출서류

가. 제출기간: 2024. 3. 29.(10:00) ~ 4. 9.(11:00)

나. 제출방법: 직접 방문(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한국세무사회 2층 회원지원팀)

다. 제출서류 목록

다-1. 보험회사

| 제출서류 <sup>*1</su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○ 제안 참가 신청서 1부(붙임2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제안서 - 접수용 원본 1부, 평가용 사본 20부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보험약관(영문, 국문)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시) 각 1부 <sup>*2</sup> |
| ○ 지급여력비율 확인서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보험전문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인증서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 사본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보험수익 증빙서류(최근 회계연도)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제안회사 일반현황 1부(붙임3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제안회사 경영실태평가 1부(붙임4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서약서, 확인서, 보안서약서 각 1부(붙임5,6,7)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(붙임8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위임장 및 수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(붙임9)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○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(붙임10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1.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

\*2. 본인감을 날인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불필요함.

※ 입찰참가용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.

※ 제안회사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,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회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.

## 다-2. 운영회사

### 제출서류<sup>\*1</sup>

- 제안 참가 신청서 1부(붙임2)
- 제안서 - 접수용 원본 1부, 평가용 사본 20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법인등기부등본, 법인인감증명서, 사용인감계(사용인감 사용시) 각 1부<sup>\*2</sup>
- 신용평가기관의 평가 결과 인증서 사본 1부
- 제안회사 일반현황 1부(붙임3)
- 2024년도 보험중개사(법인) 영업보증금 결정금액 통보서 사본 1부
- 금융감독원 제출 재무제표(2개년) 1부
- 서약서, 확인서, 보안서약서 각 1부(붙임5,6,7)
- 입찰결과 이행각서 1부(붙임8)
- 위임장 및 수임자의 재직증명서 각 1부(붙임9)
-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(붙임10)

\*1. 사본으로 제출하는 모든 증빙서류는 원본대조필 날인

\*2. 본인감을 날인해서 문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사용인감계 불필요함.

※ 입찰참가용 서류는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.

※ 제안회사는 제안서 제출 이후 제안서를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없으며, 제안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제안회사의 과실이나 실수가 있더라도 제안서 제출 이후에는 철회할 수 없음.

라. 제출시 유의사항 : 제안서 제출시 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함께 제출

## 5. 제안서 평가항목

### 5-1. 보험회사

- 가. 보험수익/지급여력/신용등급/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결과
- 나. 세무사업무 이해도 및 배상책임보험 운영 책임성
- 다. 보험운영 및 상품계획
- 라. 손해배상처리 체계 및 구성
- 마. 클레임 발생시 대응력

## 5-2. 운영회사

- 가. 매출액/신용등급
- 나. 보험운영 및 상품계획
- 다. 손해배상처리체계 및 구성
- 라. 클레임 발생시 대응력

## 6. 선정방법

### 6-1. 보험회사

- 가. 제안서 공모 후 접수된 보험회사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위원별 점수 합산 결과,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득점순으로 2~4개 보험회사 선정한다.
- 나. 보험회사 동일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중 제안 충실도(비계량지표 합계), 보험수익, 지급여력, 신용등급, 금융소비자보호실태평가 등급 순으로 점수가 높은 보험회사 선정한다.
- 다.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다.  
※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 평가점수 제외
- 라. 최종 선정된 상위 2~4개 회사에 대해 한국세무사회에서 별도로 지분율을 정한다.
- 마. 제안에 응한 보험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를 타진하여 제안서 제출 요청 및 평가한다.
- 바. 제안에 응한 보험회사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점수인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.
- 사. 위 각 호에 따라 선정된 보험회사는 최고득점순으로 수행업무 및 범위, 보험요율 등 협상완료 후 계약 체결한다.

### 6-2. 운영회사

- 가. 제안서 공모 후 접수된 운영회사의 제안서를 평가하여 위원별 점수 합산 결과,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 중에서 최고득점 운영회사 선정한다.
- 나. 운영회사 동일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평가지표 중 제안 충실도(비계량지표 합계) 점수가 높은 운영회사 선정한다.
- 다. 평가점수는 업체별로 심사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다.  
※ 최고 최저점수가 동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인 평가점수 제외

- 라. 제안에 응한 운영회사가 없을 경우에는 수행 가능한 운영회사를 대상으로 가입 의사를 타진하여 제안서 제출 요청 및 평가한다.
- 마. 제안에 응한 운영회사가 단수일 경우에는 평가기준점수인 70점 이상을 득점하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.
- 바. 위 각 호에 따라 선정된 운영회사는 최고득점순으로 수행업무 및 범위 등 협상완료 후 계약 체결한다.

## 7. 기타사항

- 가.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 업체의 부담으로 한다.
- 나. 본 건의 제안평가 기준, 제출서류 및 평가방법에 관하여는 제안서 제출 전 완전히 숙지하고 평가에 응하여야 하며,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 참가자에게 있다.

8. 문의처: 한국세무사회 회원지원팀 유용화 차장(☎02-6011-8541)  
또는 이메일(service@kacpta.kr)

위와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. 3. 29.

